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□ **변경 사유** :

1. 운용전문인력 변경(김주형 → 김진성, 전효준)
2.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조로 변경
3.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변경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14년 2월 10일

□ **변경 내용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30 연금저축 증권 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: AH560	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30 연금저축 증권 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: AH560 <u>C : A0714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. 특수형태	-	<u>종류형(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)</u>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30 연금저축 증권 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: AH560	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30 연금저축 증권 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: AH560 <u>C : A0714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<u>2013.4.26 투자신탁 최초 설정</u> <u>2014.2.10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조로 변경</u> <u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연혁]</u> <u>-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모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 <u>2014.2.10 투자대상자산 중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</u>

5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김주형	김진성, 전효준
5. 운용전문인력 나.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<u>김주형 : 2013.04.26.~현재</u>	김주형 : 2013.04.26 ~ <u>2014.02.09</u> 김진성 : 2014.02.10~현재 <u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]</u> - <u>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모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 김주형 : <u>2013.01.04~2014.02.09</u> 김진성 : 2014.02.10~현재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투자신탁, 증권(채권혼합형), 개방형, 추가형, <u>모자형</u>	투자신탁, 증권(채권혼합형), 개방형, 추가형, 모자형, <u>종류형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	-	<u>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형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.</u> <u>C클래스 (펀드코드: A0714)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“연금저축계좌”의 가입자 중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-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 - <u>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모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 8) 환매조건부 매수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	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%이하를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모집합투자기구(채권혼합형)에	<u>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이하를 주식에 투자하고 국공채, 통안채 및 AA 이상의 회</u>

<p>합한 투자자 유형</p>	<p>투자하는 증권자집합투자기구(채권 혼합형)으로서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중간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만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[채권형]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</p>	<p><u>사채 등 우량채권에 70% 수준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(채권혼합형)으로서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중간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증권투자신탁 보다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채권형 증권투자신탁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</u></p> <p><u><트러스톤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> 변경</u></p>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</p>	<p>2)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“연금저축계좌”의 가입자만 가능합니다.</p>	<p>2) 가입자격 <u>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 종류 및 매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.</u> - C클래스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“연금저축계좌”의 가입자 중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※ 판매회사에 따라 최소투자규모 등 별도의 가입제한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.</p>
<p>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</p>	<p>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합니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.</p>	<p>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[<u>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</u>]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[<u>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</u>]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<u>순자산총액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]</u>"이라 합니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. ※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(Class)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</p>

	<p>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.</p>	<p>있습니다.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[<u>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포함</u>]은 매일 산정하며, 보수,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.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	-	<p><u>이 투자신탁은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류별로 수익증권이 발행되며, 종류별 보수 및 수수료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.</u></p>
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 배분</p>	<p>2)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이익 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	<p>2)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별</u>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